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육책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및 공상 공무원의 편의 제고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제한(안 제55조의2, 별표1제2호, 제6조, 제23조, 제84조)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재해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함.

나.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제1호)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유족인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4조)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공무원 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라. 전자청구 근거 마련(안 제14조)

공무원등이 재해보상 급여 청구 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해 전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재활급여 지급기간 합리화(안 제38조, 제39조)

재활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바. 원격영상회의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제73조)

코로나19 확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자해행위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완화(안 제5조)

자해행위에 따른 공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공무와 자해행위 간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4.~2021. 5.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것이 의학적으로”를 “상당인과관계가”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중 “청구”를 “청구(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

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심리상담은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

단기준 및 감액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같은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와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급여제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와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의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신청할 때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 신청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 심의 대상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제한 신청서류,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급여제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사람이 급여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서(급여제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를 받으면 각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⑧ 동일한 사람에 대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결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제7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

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제목 “공무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을 “유족급여 지급기준(제4조 및 제55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1. 공무원 등이 부양 한 사실의 인정기준 (제4조제1 항 관련)	가. 배우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소 판결문」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법 제3 조제2항 제1호의 자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 판결문」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다.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3조제2항 제2호의 자녀 · 손자녀 ·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 (제55조의2 제1항 관련)	가. 부모	1)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가)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나)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 동안 공무원등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여부 다) 그 밖에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 동안 공무원등의 복리를 침해한 여부 2) 재해유족급여 감액비율 재해유족급여 감액비율은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비고 1. 제2호가목1)가), 같은 목 1)나) 및 같은 목 1)다)에서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은 생후부터 19세 미만을 말한다. 2. 제2호가목1)가)에서 “주거를 같이 한”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2호가목1)가)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은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감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생략)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 ·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각각 <u>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u> 를 말한다.	②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u>것이 의학적으로</u> 인정되는 경우	3. ----- ----- ----- 상당인과관계가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

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 6. (생략)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② (생략)

<신설>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급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① -----

----- 청구(공무원 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⑥ (생략)

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⑦ ----- 제6항-----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공무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심리상담은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

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심리상담은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신 설>

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같은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 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와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급여 제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와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의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신청할 때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 신청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

에 따른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제한 신청서류,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급여제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사람이 급여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제73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략)
<신설>

거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
고,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서
(급여제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를 받으면 각 급
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
정하여 지급한다.

⑧ 동일한 사람에 대해 법 제44
조제4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
해유족급여의 제한에 대한 결정
이 있거나 「공무원연금법」 제
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
여의 제한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않고 해당 결정에 따라 급여
를 지급한다.

제73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
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u><신설></u> <u>7.·8.</u> (생략)	<u>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u>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 ----- -----. 1. ~ 6. (현행과 같음) <u>7.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u> <u>8.·9.</u>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34